

## 2. 租稅減免規制法施行規則中 改正令

財務部令 1850號 1991年 3月 13日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의 표 제1호 내지 제4호중 “500만원”을 각각 “800만원”으로 한다.

제1조의4제4항제1호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500만원 이내인 것”을 “800만원 이내인 것”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는”을 “800만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조의6제1항 내지 제6항중 “영 제2조의5”를 각각 “영 제2조의6”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영 제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과 영 제12조의3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법인세

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에 해당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중 제4호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호제2항제2조제7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제7호 선박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③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중 제7호 선박 및 제8호에 해당되는 항공기로 한다.

④영 제12조의3제2항·영 제28조제2항 또는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의3의 제목“(세액감면신청서)”를“(세액감면신청서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영 제33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4제4항”을 “영 제33조의3제2항·영 제33조의4제4항 및 영 제33조의6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1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영 제14조제4항”을 “영 제14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본문중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전담부서”를 “직업훈련용시설(중소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위의 과정을 졸업한 자)

⑨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비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이하 이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1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⑩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교과과정 등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⑪영 별표6중 2. 인력개발란의 사목에

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물품, 자재비, 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제12조의2중 “영 제33조의4제3항 및 영 제57조제4항”을 “영 제33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법 제67조의11제1항·법 제67조의12제1항·법 제67조의13제1항 또는 법 제67조의1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영 제55조의9제1항제1호 본문·영 제55조의10제5항·영 제55조의11제3항 본문 또는 영 제55조의14제4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49조제3항”을 “영 제49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영 제33조의5제11항·영 제36조제3항·영 제36조의2제7항·영 제38조제3항·영 제38조의2제4항·영 제39조제3항·영 제47조제3항·영 제47조제3항·영 제49조제4항·영 제55조의3제4항·영 제55조의9제7항·영 제55조의10제3항·영 제55조의11제4항·영 제55조의12제4항·영 제55조의13제2항 및 영 제55조의14제6항에 규정하는 세액면제(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⑥영 제33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 동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증자소득공제) ①영 제45조제5항제7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8항에 규정된 주식을 말한다.

- ②영 제45조제8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 ④영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중 “제19호”를 “제21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18조제7항 내지 제10항”을 “제18조제8항 내지 제16항”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4호 내지 제9호·제13호·제14호·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되는 것.

6. 광업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부동산(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휴광하기 직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제20조의3제1항제1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가.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

나. 운동장·경기장·연수원 또는 휴양소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다.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등

라. 주차장용 토지.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나목·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  
바.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

사. 임야·농경지·묘포장용 토지등

아. 예비군훈련장용 토지등

자. 블록·토관·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차. 염전·광천지·지소용 토지

카. 음식업에 사용되는 토지등. 이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타. 광업용토지로서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및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2)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1호에 규정된 토지등

하. 매매사업용 토지등

제20조의6의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휴토지등의 판정)”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를 “판정을 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20조의7제1항후단중 “영 제55조의9제6항”을 “영제55조의9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영 제55조의9제5항”을 “영 제55조의9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의9의 제목중 “특별부가세 면제”를 “특별부가세 면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5조의11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 지원시설”이라 함은 법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의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1. 목장용 토지등
2. 부동산매매사업·부동산임대사업·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 토지등
3. 사원용주택

④영 제55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세(계획)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영 제55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명세(계획)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는 별지 제36호 서식과 같다.

제20조의11을 제20조의12로 하고, 제2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1(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특례) ①영 제55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매립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법인을 말한다.

1. 매립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립자로부터 매립농지를 출연받은 법인
- ②영 제5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

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에 발급하는 증명서 등을 말한다.

제20조의12(중전의 제20조의11) 중 “영 제55조의13”을 “영 제55조의15”로 한다.

⑨영 제57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8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1조의4의 제목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의 범위)”를 “(수산물 생산기초시설 및 농업기계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58조제2항제1호 다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김 건조시설
2. 멸치 자숙·건조시설
3. 미역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영 제57조의8제1항 및 영 제57조의9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6호(8)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

한다.

②영 제5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7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투자준비금명세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22조제1항중 “영 제58조제4항제2호”를 “영 제58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 소득세법 제76조 및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frac{\text{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외제세액}}{\text{과세대상국의 원천소득중 사업소득}} \times \text{과세대상국의 원천소득}$$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frac{\text{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외제세액}}{\text{국외에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times \text{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  
해손실세액공제액

가.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 × 재해상실비율  
(가산금 포함)

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  
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재해손실세  
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액 +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액) + 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

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율 ×  
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제25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8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세의 환급세액은 당해 기속사가 준  
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  
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  
지 제12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

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  
서식]·[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  
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3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6호서  
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  
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  
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  
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  
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  
항제1호·동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지출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민지원시설의 특별부가세면제  
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027호 조세  
감면규제법시행령중 개정령의 시행일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  
례) 제21조의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됨에 따라 이들에게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 및 인력개발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 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저율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는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의 저축원금의 상한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각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상품의 저축원금 상한을 조정함(제1조의3 및 제1조의4).
- 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을 추가함(제5조의2제1항).
- 다.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일정한도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바, 이러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의 인건비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의 인건비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생산성향상인력개발비의 범위를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자체교육비·한국공업표준협회·한국생산성본부 등에의 위탁훈련비로 함(제6조).
- 라.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함(제21조).
- 마.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에 공



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러한 수산물생산기초 시설의 범위를 김·멸치·미역 및 오징어의 건조시설 등으로 함(제21조의4).

〈재무부 제공〉